

□ 진단검사 문항 및 문항해설

초등학생(4~6학년)

문항 및 문항해설

설문 문항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문항 8 , 역문항 4]

연번	영역	문항	상세 해설
1		남학생은 체육 시간을 좋아하고 여학생은 미술 시간을 좋아한다.	교과 학습이나 활동을 좋아하는 것에 성별 차이가 있다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의 예로 '국어나 미술은 여학생이 뛰어나고 수학이나 체육은 남학생이 뛰어나다.', '남학생은 조립·설치를 잘하고, 여학생은 요리·청소를 잘한다.'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성별로만 판단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2	성별 고정관념	'남자답게~', '여자답게~' 라는 말은 성별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말이다.	성별 고정관념이란 성별에 따라 같은 특성을 가진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답게 울지 않고 씩씩하다.', '여자답게 참 얌전하다.' 같이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이나 사회적 역할을 특정 지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전통적인 성 역할로부터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남자답게~', '여자답게~'가 아닌 '너답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개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3		맞벌이하더라도 여자가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주로 해야 한다.	성별에 따라 정해진 역할이 있다는 생각은 '성 역할 고정관념'입니다.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하며, 남자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얽매이기보다 저마다의 역량과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집안일과 자녀 양육은 가족 구성원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분담되어야 하며, 이는 한 사람이 감당하기보다 함께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4	성차별 문화 및 사회구조	여자에게 더 적합한 직업이 있고 남자에게 더 적합한 직업이 있다.	'여자 일'과 '남자 일'은 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잘하는 것'과 '어울리는 것'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면 진로 선택의 기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계 다루는 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살펴주는 일을 잘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사람마다 타고나거나 노력으로 길러지는 것으로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문 문항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문항 8, 역문항 4]

연번	영역	문항	상세 해설
5	성차별 문화 및 사회구조	나는 글, 그림, 영상 등의 매체에서 성차별적 표현을 찾아낼 수 있다.	매체 속 성차별적 표현의 예는 '활동적이고 리더십 있는 모습은 남자로, 조용하고 순종적인 모습은 여자로 표현하기', '외모 치장에 공을 들이는 여성상', '경제력을 책임지는 남성상' 등입니다. 성차별적 표현을 매체에서 보여주는 대로만 받아들인다면 나도 모르게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시선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성인지감수성을 길러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6		무거운 물건 옮기기와 같은 일을 남학생에게만 시키는 것은 성차별이다.	'무거운 물건은 남자가 드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무거운 물건은 힘센 사람이 드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일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관련 있으며 남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 평등한 사회는 성별과 상관없이 신체적 특성, 능력, 구성원의 생각 등을 고려하여 모두에게 합리적으로 역할을 맡기는 사회입니다.
7	젠더폭력에 대한 통념 및 인식	나는 친한 사이(친구, 가족 등)라도 신체접촉이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한다.	누군가 나의 몸을 만지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고 싶을 때는 친밀한 사이더라도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책임 있는 성 행동이란, 첫째,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알고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 둘째, 성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 것, 셋째, 상대의 거절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침묵은 동의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8		성희롱은 피해자가 오해 살만한 말이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성희롱 등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거나 밤늦게 돌아다녔으니 그런 일을 당했다는 반응입니다. 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임이 명백한데도,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논의가 아직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성폭력을 정당화하며 가해자의 행동을 사회적으로 용인하게 만들어, 또 다른 성폭력의 발단이 됩니다.

실문 문항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문항 8, 역문항 4]

연번	영역	문항	상세 해설
9	젠더폭력에 대한 통념 및 인식	가족, 연인 사이에서의 폭력도 외부(이웃, 경찰 등)에서 개입해야한다.	친밀하다는 이유로 가정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을 '사랑싸움', '애정 표현'으로 부르며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지극히 사적인 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통해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외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10	온라인 성인지 감수성	합성사진, 불법 촬영물 등을 친구들과 돌려보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모든 성 착취물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며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2에 따라,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합성 사진, 불법 촬영물 등을 친구들과 돌려보는 것과 같이 반포(유포)한 사람도 같게 처벌됩니다.
11		메타버스, 게임 등 가상공간에서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성범죄이다.	온라인 공간의 캐릭터라 할지라도 화면 뒤에는 실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가상공간에서의 가상 인물을 통한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정보가 등록되며, 사건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비자 발급 제한 등 여러 조치가 내려집니다.
12		온라인에서 친해진 사람에게 손, 발 등 신체 일부 사진이라도 보내면 안 된다.	온라인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전송하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이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그루밍은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성범죄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요청이나 도움을 통해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신체 촬영물, 조건만남 등을 요구합니다. 결국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여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중 · 고등학생

문항 및 문항해설

실문 문항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문항 8, 역문항 4]

연번	영역	문항	상세 해설
1		'남자답게~', '여자답게~' 라는 말은 성별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말이다.	성별 고정관념이란 성별에 따라 같은 특성을 가진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답게 울지 않고 씩씩하다.', '여자답게 참 얌전하다.' 같이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이나 사회적 역할을 특정 지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전통적인 성 역할로부터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남자답게~', '여자답게~'가 아닌 '너답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개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2	성별 고정관념	남학생은 체육을 좋아하고 여학생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편견이다.	교과 학습이나 활동을 좋아하는 것에 성별 차이가 있다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의 예로 '국어나 미술은 여학생이 뛰어나고 수학이나 체육은 남학생이 뛰어나다.', '남학생은 조립·설치를 잘하고, 여학생은 요리·청소를 잘한다.'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성별로만 판단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3		맞벌이하더라도 여자가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주로 해야 한다.	성별에 따라 정해진 역할이 있다는 생각은 '성 역할 고정관념'입니다.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하며, 남자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얽매이기보다 저마다의 역량과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집안일과 자녀 양육은 가족 구성원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분담되어야 하며, 이는 한 사람이 감당하기보다 함께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4	성차별 문화 및 사회구조	여자에게 더 적합한 직업이 있고 남자에게 더 적합한 직업이 있다.	'여자 일'과 '남자 일'은 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잘하는 것'과 '어울리는 것'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면 진로 선택의 기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계 다루는 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살펴주는 일을 잘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사람마다 타고나거나 노력으로 길러지는 것으로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문 문항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문항 8, 역문항 4]

연번	영역	문항	상세 해설
5	성차별 문화 및 사회구조	나는 글, 그림, 영상 등의 매체에서 성차별적 표현을 보면 불편하다.	매체 속 성차별적 표현의 예는 '활동적이고 리더십 있는 모습은 남자로, 조용하고 순종적인 모습은 여자로 표현하기', '외모 치장에 공을 들이는 여성상', '경제력을 책임지는 남성상' 등입니다. 성차별적 표현을 매체에서 보여주는 대로만 받아들인다면 나도 모르게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시선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성인지감수성을 길러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6		무거운 물건 옮기기와 같은 일을 남학생에게만 시키는 것은 성차별이다.	'무거운 물건은 남자가 드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무거운 물건은 힘센 사람이 드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일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관련 있으며 남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 평등한 사회는 성별과 상관없이 신체적 특성, 능력, 구성원의 생각 등을 고려하여 모두에게 합리적으로 역할을 맡기는 사회입니다.
7	젠더폭력에 대한 통념 및 인식	친밀한 사이라면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가벼운 신체접촉 정도는 가능하다.	누군가 나의 몸을 만지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고 싶을 때는 친밀한 사이더라도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책임 있는 성 행동이란, 첫째,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알고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 둘째, 성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 것, 셋째, 상대의 거절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침묵은 동의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8		성희롱은 피해자가 오해 살만한 말이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성희롱 등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거나 밤늦게 돌아다녔으니 그런 일을 당했다는 반응입니다. 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임이 명백한데도,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논의가 아직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성폭력을 정당화하며 가해자의 행동을 사회적으로 용인하게 만들어, 또 다른 성폭력의 발단이 됩니다.

실문 문항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문항 8, 역문항 4]

연번	영역	문항	상세 해설
9	젠더폭력에 대한 통념 및 인식	가족, 연인 사이에서의 폭력도 외부(이웃, 경찰 등)에서 개입해야한다.	친밀하다는 이유로 가정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을 '사랑싸움', '애정 표현'으로 부르며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지극히 사적인 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통해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외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10	온라인 성인지 감수성	합성사진, 불법 촬영물 등을 친구들과 돌려보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모든 성 착취물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며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2에 따라,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합성 사진, 불법 촬영물 등을 친구들과 돌려보는 것과 같이 반포(유포)한 사람도 같게 처벌됩니다.
11		메타버스, 게임 등 가상공간에서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성범죄이다.	온라인 공간의 캐릭터라 할지라도 화면 뒤에는 실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가상공간에서의 가상 인물을 통한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정보가 등록되며, 사건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비자 발급 제한 등 여러 조치가 내려집니다.
12		온라인에서 친해진 사람에게 손, 발 등 신체 일부 사진이라도 보내면 안 된다.	온라인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전송하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이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그루밍은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성범죄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요청이나 도움을 통해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신체 촬영물, 조건만남 등을 요구합니다. 결국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여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교직원 및 보호자

문항 및 문항해설

실문 문항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문항 3, 역문항 9]

연번	영역	문항	상세 해설
1	성별 고정관념	남학생은 체육활동을 좋아하고 여학생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국어, 미술은 여학생이 뛰어나고, 수학, 체육은 남학생이 뛰어나다.' '남학생은 조립·설치를 잘하고, 여학생은 요리·청소를 잘한다.' 이처럼 교과나 활동에 성별 차이가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다양한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성(性)으로 이분화하여 판단하는 것은 성 차별에 해당됩니다.
2		맞벌이를 해도 가사일과 자녀 양육은 일차적으로 여자(아내)의 책임이다.	남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집 밖의 일을 담당하고,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집 안의 일을 해야한다는 말은 성별에 따라 정해져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잘못된 "성 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 역할은 사회환경과 문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개인의 역량과 생각을 존중하고 올바른 성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며 정체성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결혼할 때 신혼집은 남성이 마련해야 한다.	'신혼집은 남자가 혼수는 여자가 마련해야 한다'는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신혼집 마련을 남성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견해는 더 이상 주류가 아닙니다. 남성에게 요구되는 가족 부양의 1차적 책임, 남성의 경제력에 대한 과중한 기대로 주택 마련을 남성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은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입니다.
4	성차별 문화 및 사회구조	'너 여자냐?', '너 남자냐?'라는 말은 친구를 놀리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 표현이다.	공정 또는 부정적으로 여성의 특정 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표현한 말로 성차별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차별적 표현은 성별 간의 차별을 고착화시킴으로써 성별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5		학교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덜 대우받고 사실상 역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역차별이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기존의 특권층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역차별은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었을까요? 성평등을 위한 노력은 성(性) 대결 구도나 혐오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6		고위직에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그만큼 힘든 일을 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1986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처음 사용한 '유리천장'(glass-ceiling)이란 단어는 여성이나 소수자들의 사회 고위직 진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유리 천장의 가장 큰 원인은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와 출산 및 육아 문제 등 여성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 때문입니다. 사회구조의 불평등을 인식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지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설문 문항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문항 3, 역문항 9]

7	젠더폭력에 대한 통념 및 인식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신고할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후회와 두려움 등 복합적 감정으로 신고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변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일인데 일을 크게 만든다' 등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는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즉시 바로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 때문입니다.
8		가정폭력은 개인의 일이므로 경찰 등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여 방치하지 않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회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의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		사랑하는 사람의 옷차림이나 귀가 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일반남성 10명 중 8명이 데이트폭력을 휘두른 경험이 있으며, 유형별로 '통제행동(71.7%)'이 가장 많았으며 연인의 옷차림을 제한하거나, 휴대폰·이메일·블로그 등을 검열하는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통제행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가해자가 이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10	온라인 성인지 감수성	짧은 치마나 레깅스 등의 옷차림은 불법촬영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피해자 유발론'은 성폭력 가해자의 전형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유발론을 당연한 듯 주장한다면 여론과 통념의 뒷받침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피해자의 옷차림이 마치 불법촬영에 동의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바뀌어야 합니다. 성폭력은 100% 가해자 책임입니다.
11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돈을 주고 사서 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2020년 5월 19일부터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의해 불법 촬영물과 비동의 유포물(동의없이 퍼뜨려진 영상)을 가지고 있거나 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도 피해자 동의 없이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과 강요를 하면 1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12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신체노출 사진, 영상 등)을 혼자 가지고만 있는 것도 처벌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은 디지털성범죄를 확산시키는 2차 가해 행위이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됩니다. 모든 성착취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소지, 보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가해 행위이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므로 근절되어야 마땅한 범죄입니다.

참고문헌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2. 여성가족부, 2019, 디지털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
3. 울산광역시교육청, 2019, 성인지감수성 보고서(초중고비교) 요약본
4. 국가인권위원회, 2023, 형사사법분야 법집행공무원 성인지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 울산광역시교육청, 2022, 성인지감수성 자가진단
7. 교육부, 2020, 초중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지감수성 교육
8. 서울시특별시교육청, 2020, 성인지감수성 체크리스트 및 설명서
9. 국가인권위원회, 2021, 인권교육 기본용어
10. 여성가족부, 2023, 2022년 국가성평등보고서
11. 법무부, 2020, 디지털 소통로
12.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예술작품 활동 성교육
13.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성인지 실태조사 보고서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2, 존중과 책임의 시작! 성교육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0,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16. 충청남도교육청, 2021, 보면 볼수록 건강해지는 보건교육유한김벌리
1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0, 교실속성평등시리즈
1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3,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교수학습안
1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청소년용 성평등 가이드북
20. 홈페이지: 젠더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탁틴내일 자료실, 우월해